

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-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상향 조정 및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등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 시설 노후화 등 차량 대형화로 인하여 미 이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율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의 주차면수 감면을 50퍼센트 범위의 주차 면수 감면으로 상향 조정
-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하여야하나 완화된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으로 재 설치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 기준 적용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 제19의13 규정에 의거 노후·고장 및 규격이 맞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유도를 통해 당초 부설 주차장 설치대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대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